

2023 학부모총회 안내 자료

---

# 학교 생활 안내

---



조 남 중 학 교



# CONTENTS

## I. 학교 소개

- 1. 비전 및 교육목표 ..... 3
- 2. 교훈 ..... 4
- 3. 학교상징 ..... 4
- 4. 학교자율과제 ..... 5

## II. 학교 현황

- 1. 학교현황 ..... 9
- 2. 교실배치도 ..... 10
- 3. 2022학년도 졸업생 입학 현황 ..... 11

## III. 교육과정 안내

- 1. 연간 학사 일정 ..... 15
- 2. 학교교육과정 편제 ..... 17
- 3. 일과 시간표 ..... 18

## IV. 평가 안내

- 1. 2023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 ..... 21

## V. 학교생활 안내

- 1. 학교 생활지도 기본규칙 ..... 29
- 2. 출결 관리 ..... 31
- 3. 원격교육 출결 규정 ..... 33
-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35
- 4. 학생 시상계획 ..... 44
- 5. 고입 학교 구분별 특성 및 반영 지침 ..... 45





# CONTENTS

6. 자유학년제 운영방안 .....	47
7. 학교도서관 운영 .....	53
8. Wee클래스 운영 .....	55
9. 진로진학 상담 안내 .....	56
10. 2023 급식운영 계획 .....	58
11. 급식 시간 운영 및 위생관리 .....	59

## VI. 학부모 연수

1.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63
2. 봉사활동 운영 안내 .....	65
3. 불법찬조금 학부모 연수 .....	68
4.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69
5. 아이엠 스쿨 설치 및 사용법 안내 .....	70
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	72
7. 안전교육 .....	73
8. 자녀에게 알려주는 성교육 .....	76
9.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	78
10.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안내 .....	79
11. 감염병 예방교육 .....	80
12.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83
13.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84
14. 정보통신윤리 교육 .....	85
15. 장애 이해 교육 .....	86
16.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	91
17. 조남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	93







# I. 학교 소개

1. 비전 및 교육목표 .....	3
2. 교훈 .....	4
3. 학교상징 .....	4
4. 학교자율과제 .....	5



# I 학교 소개

## 1 비전 및 교육목표

비전	배움의 즐거움으로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학교
교육목표	바른 인성으로 꿈을 찾아가는 조남인 육성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람



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추  
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며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대하는 인간상

- **꿈을 가꾸는 학생**
  - 꿈과 열정이 살아있는 학생
  - 품격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 **함께하는 학부모**
  -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육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 **존경받는 교사**
  - 배움이 즐거운 교실은 만드는 교사
  - 자기 연찬에 충실하고 인화 협동하는 교사
- **소통하는 학교장**
  - 소통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장
- **신뢰받는 학교**
  - 배려와 협동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학교

**학교장 경영방침** 배려, 공감, 소통으로 화합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삶의 역량을 가꾸어 가는 학교
-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
- 존중과 배려로 화합하는 따뜻한 학교
- 참된 가르침과 배움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
- 바른 인성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육성

## 2 교훈

성실은 참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말이 정성스럽고 생각이 정성스럽고 행동과 생활이 정성스러워야 함을 뜻함.  
화합은 서로 간에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harmony).

## 3 학교상징

### ▶ 교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 : 청운의 꿈을 상징</li> <li>● 원 : 꿈을 이룸. 또는 화합을 상징</li> <li>● 무지개 : 밝은 미래와 다양성의 조화를 상징 (조화로운 사람을 상징하고, 역동적으로 함께 성장함을 뜻함)</li> </ul>
------------------------------------------------------------------------------------	---------------------------------------------------------------------------------------------------------------------------------------------------------------------------

### ▶ 교목 : 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닥나무는 활엽교목으로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므로 종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조남인을 상징</li> </ul>
-------------------------------------------------------------------------------------	--------------------------------------------------------------------------------------------------------------------

### ▶ 교화: 도라지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라지꽃은 성실, 소망, 행복한 미소를 상징함</li> </ul>
-------------------------------------------------------------------------------------	-------------------------------------------------------------------------------

4

학교자율과제

학생자치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조성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 역량 키우기

하모니 plus!

학생 자치를 통한 인성 교육  
 Together is Better!

「아하! 하모니」 운영

‘아름다운 하모니’

- 학생자치회 자율성 확대
- 자율동아리 활동 활성화
- 「아하! 하모니」 학교 축제 운영
- 학급헌법 만들기/학생자치법정 운영
-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토론회」
- 「마을과 연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용

꿈 진로교육 plus!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  
 Searching Dream!

「탐색하는 나의 꿈」 운영

‘탐색하는 나의 꿈’

- 교과 연계지도
- 교과관련 직업군별 운영
- 진로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
-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진로포트폴리오 진로성장기록 관리
- 성장 단계별 진로심리검사 결과 활용





## Ⅱ. 학교 현황

- 1. 학교현황 ..... 9
- 2. 교실배치도 ..... 10
- 3. 2022학년도 졸업생 입학 현황 ..... 11



## II 학교 현황

### 1 학교 현황

#### 가. 학교 연혁

- 2017. 3. 1. 조남중학교 개교
- 2017. 3. 1. 초대 유승일 교장 취임
- 2017. 3. 2. 제1회 입학식(66명, 1, 2, 3학년 5학급) 총 126명
- 2018. 2. 9. 제1회 졸업식(23명)
- 2018. 3. 2. 제2회 입학식(164명, 1학년 5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3학급) 총 365명
- 2019. 1. 7. 제2회 졸업식(80명, 누계 103명)
- 2019. 3. 4. 제3회 입학식(257명, 1학년 8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5학급) 총 619명
- 2020. 1. 9. 제3회 졸업식(159명, 누계 262명)
- 2020. 4. 16. 제4회 입학식(309명, 1학년 10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7학급) 총 791명
- 2021. 1. 12. 제4회 졸업식(211명, 누계 473명)
- 2021. 3. 1. 제3대 이갑순 교장 취임
- 2021. 3. 2. 제5회 입학식(277명, 1학년 9학급, 2학년 10학급, 3학년 8학급) 총 828명
- 2022. 1. 7. 제5회 졸업식(246명, 누계 719명)
- 2022. 3. 2. 제6회 입학식(325명, 1학년 11학급, 2학년 9학급, 3학년 9학급) 총 887명
- 2023. 1. 3. 제6회 졸업식(285명, 누계 1004명)
- 2023. 3. 1. 제4대 임병권 교장 취임
- 2023. 3. 2. 제7회 입학식(333명, 1학년 11학급, 2학년 10학급, 3학년 9학급) 총 917명

#### 나. 학생 및 학급 현황 (3월 2일 기준)

학년	학급수	남	여	학생수
1학년	11	177(1)	156(2)	333(3)
2학년	10	158	159	317
3학년	9	137(3)	130(2)	267(5)
계	30학급(2)	453(4)	458(4)	917(8)

#### 다.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육행정 실장	부장 교사	교사	일반직	교육 공무직	계
인원	1	1	1	12	47	2	16	80

#### 라. 교과별 교원 현황

교과 및 구분	교 장	교 감	국 어	도 덕	역 사	사 회	수 학	과 학	가 가	정 컴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한 문	중 국어	진 로 진 학	특 수	보 건	영 양	사 서	전 상 담	합 계	
현원	1	1	7	3	3	3	7	6	3	1	6	2	2	7	1	1	1	2	1	1	1	1	1	61

#### 마. 시설 현황

구 분	교지 면적	체육 장 면적	관 리 실			보 통 교 실	식 당	체 육 관	특 별 교 실													기 타												
			교 장 실	교 무 실	행 정 실				특 수 학 급	보 건 실	상 담 실	유 연 관	유 연 관 회 실	과 학 실	가 정 실	기 술 실	음 악 실	미 술 실	컴 퓨 터 실	학 부 모 상 주 실	시 청 각 실	도 서 실	전 산 실	동 아 리 실	방 송 실	남 자 원 휴 게 실	생 활 지 도 실	여 자 원 휴 게 실	탈 의 실	서 고	숙 직 실	발 간 실	샤 워 실	조 리 실
수 량	8964 (㎡)	3182 (㎡)	1	5	1	30	1	1	2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6	1	1	1	2	1	1	18

## 2 교실 배치도

				<b>5층</b>		준비실 <b>제2과학실 (융합)</b> 1-11 기술실		계단 화장실(남) 화장실(여) 준비실 <b>제1과학실</b>		
				<b>4층</b>		교직원 휴게실 (남) 1-10 1-9		계단 탈의실(여) 탈의실(남) 화장실(남) 화장실(여) 계단 가정준비실 <b>가정실</b>		
		1-1 1-2 1-3 1-4		화장실 (여) 화장실 (남) 계단		<1교무실>    1-5    1-6    1-7    1-8				
				<b>3층</b>		진로진학 상담실 2-10 2-9 옥상		계단 탈의실(여) 탈의실(남) 화장실(남) 화장실(여) 계단 준비실 <b>컴퓨터실</b>		
		2-1 2-2 2-3 2-4		화장실 (여) 화장실 (남) 계단		<2교무실>    2-5    2-6    2-7    2-8				
체육관 (한울관)					<b>2층</b>		학생상담·성적처리 교감 <본교무실> 방송실 전산실		계단 탈의실(여) 탈의실(남) 화장실(남) 화장실(여) 계단	
	3-1 3-2 3-3 3-4		화장실 (여) 화장실 (남) 계단		도서실 (책꿈마루)		<4교무실> 2층 현관 <3교무실>    3-5    3-6    3-7    3-8    3-9			
급식실 (오룡당)	음악실 동아리실				<b>1층</b>		Wee클래스 학부모상주실		계단	
	연습실 1,2    준비실 교직원휴게실 (여) 준비실		화장실 (여) 화장실 (남) 계단		시청각실		당직실    인쇄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계단 창고	
	미술실									
	1층 현관		행정실    회의실    교장실				통합지원실2    통합지원실1		보건실	



### 3 2022학년도 졸업생 입학 현황

졸업생	진학자수	진학비율(%)	일반고		예술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		기타 마이스터고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관내	관외	
285	282	98.95%	3	222	4	1	4	7	11	29	1





### Ⅲ. 교육과정 안내

1. 연간 학사 일정 .....	15
2. 학교교육과정 편제 .....	17
3. 일과 시간표 .....	18



# III 교육과정 안내

## 1 연간 학사 일정

【 1학기 】

일	요일	3월	요일	4월	요일	5월	요일	6월	요일	7월
1	수	삼일절	토		월		목		토	
2	목	입학식(4) 학교폭력예방교육	일		화		금		일	
3	금		월		수	체육합마당	토		월	
4	토		화	영어듣기평가(1)	목	개교기념일	일		화	
5	일		수	영어듣기평가(2)	금	어린이날	월	재량휴업일	수	
6	월		목	영어듣기평가(3)	토		화	현충일	목	대토론회
7	화		금		일		수		금	
8	수		토		월	아버지날	목		토	
9	목		일		화		금		일	
10	금		월		수		토		월	
11	토		화		목		일		화	
12	일		수		금		월		수	
13	월		목		토		화		목	
14	화		금	과학의날 행사	일		수		금	
15	수		토		월	진로탐색활동(4)	목		토	
16	목	학부모총회(4)	일		화		금		일	
17	금		월		수		토		월	
18	토		화	목요일수업(6)	목		일		화	
19	일		수	1학년 수련회	금		월		수	여름방학식(2)
20	월		목	1학년 수련회	토		화		목	
21	화		금	1학년 수련회 2,3학년 체험학습	일		수		금	
22	수		토		월		목		토	
23	목		일		화		금		일	
24	금		월		수		토		월	
25	토		화		목		일		화	
26	일		수		금		월		수	
27	월		목	학생인권교육	토	석가탄신일	화	1학기지필평가	목	
28	화		금		일		수	1학기지필평가	금	
29	수		토		월	대체휴일	목	1학기지필평가	토	
30	목	진로표준화 검사	일		화		금		일	
31	금				수				월	
수업 일수	3월	22일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3일
1학기 수업일 수			95일		•요일별 수업일 수		월(18), 화(19), 수(19), 목(20), 금(19)			
					•급식 미실시일 (3일)		4/21, 6/29, 7/19			

【 2학기 】

일	요일	8월	요일	9월	요일	10월	요일	11월	요일	12월	요일	2024.1월
1	화		금		일		수		금		월	신정
2	수		토		월	재량휴업	목		토		화	
3	목		일		화	개천절	금		일		수	
4	금		월		수		토		월		목	졸업/진급 평정화
5	토		화	영어듣(1)	목		일		화		금	
6	일		수	영어듣(2)	금	월요일수업	월		수		토	
7	월		목	영어듣(3)	토		화		목		일	
8	화		금		일		수		금		월	
9	수		토		월	한글날	목		토		화	종업식 /졸업식(2)
10	목		일		화		금		일		수	
11	금		월		수		토		월		목	
12	토		화		목		일		화	2학기지필평가 (2학년)	금	
13	일		수		금		월		수	2학기지필평가 (2학년)	토	
14	월		목		토		화		목	2학기지필평가 (2학년)	일	
15	화	광복절	금		일		수	진로체험의날(4)	금		월	
16	수		토		월		목	대수능 재량휴업	토		화	
17	목	개학	일		화		금		일		수	
18	금		월		수		토		월		목	
19	토		화		목		일		화		금	
20	일		수		금		월		수		토	
21	월		목		토		화	2학기지필평가 (3학년)	목	학생회장 연설	일	
22	화		금		일		수	2학기지필평가 (3학년)	금	학생회장 선거	월	
23	수		토		월		목	2학기지필평가 (3학년)	토		화	
24	목		일		화		금		일		수	
25	금		월		수		토		월		목	
26	토		화		목		일		화		금	
27	일		수		금		월		수		토	
28	월		목	추석연휴	토		화		목		일	
29	화		금	추석	일		수		금	축제 및 동아리활동	월	
30	수		토	추석연휴	월		목		토		화	
31	목				화				일		화	
수업 일수	8월	11일	9월	19일	10월	19일	11월	21일	12월	20일	1월	6일
2학기 수업일 수				96일			•요일별 수업일 수			월(18), 화(20), 수(20), 목(19), 금(19)		
연간 수업일 수				191일			•급식 미실시일 (3일)			11/23, 12/14, 1/9		

☆ 학교 사정에 따라 연간학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학교교육과정 편제

[ 2023학년도 3개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구분		1학년(2023학년도 입학생)						2학년(2022학년도 입학생)				3학년(2021학년도 입학생)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시수	자유활동	계	시수	자유활동	계	시수	연계자유학년	시수	연계자유학년	시수	연계자유학년	시수	연계자유학년	
교과(군)	국어	51	17	68	51	17	68	68	(17)	68		68	(17)	68		
	사회	사회	34		34	34		34					51	(17)	51	(17)
		역사							51		51		34		34	
		도덕	34	17	51	51		51	34		34					
	수학	51	17	68	51	17	68	68		68	(17)	68		68		
	과학/기술/가정/정보	과학	51		51	34	17	51	68	(17)	68		68		68	
		기술/가정							51		51		34		34	
		정보	34		34	17	17	34								
	체육	51		51	51		51	51		51	(17)	51		51		
	예술	음악	34		34	17	17	34				34		34		
		미술	34		34	17	17	34	34		34					
	영어	51	17	68	68		68	51		51		68		68	(17)	
	선택	한문							34		34					
		생활중국어										34		3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7		17		17	17									
<b>교과(군) 소계</b>		<b>442</b>	<b>68</b>	<b>510</b>	<b>391</b>	<b>119</b>	<b>510</b>	<b>510</b>	<b>(34)</b>	<b>510</b>	<b>(34)</b>	<b>510</b>	<b>(34)</b>	<b>510</b>	<b>(34)</b>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20		20	23		23	20		23		20		23		
	동아리활동	6		6	6		6	6		6		6		6		
	봉사활동	3		3	1		1	3		1		3		1		
	진로활동	5	17	22	4	17	21	5		4		5		4		
	학교스포츠클럽활동			0			0	17	(17)	17	(17)	17	(17)	17	(17)	
<b>창의적 체험활동 소계</b>		<b>34</b>	<b>17</b>	<b>51</b>	<b>34</b>	<b>17</b>	<b>51</b>	<b>51</b>	<b>(17)</b>	<b>51</b>	<b>(17)</b>	<b>51</b>	<b>(17)</b>	<b>51</b>	<b>(17)</b>	
학교스포츠클럽활동(순증)																
<b>수업시수 총계</b>		<b>476</b>	<b>85</b>	<b>561</b>	<b>425</b>	<b>136</b>	<b>561</b>	<b>561</b>	<b>(51)</b>	<b>561</b>	<b>(51)</b>	<b>561</b>	<b>(51)</b>	<b>561</b>	<b>(51)</b>	
<b>학교스포츠클럽활동 소계</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b>(17)</b>	
자유학기체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34			34										
		진로탐색활동	17			17										
		예술체육활동						51								
		동아리활동	34			34										
<b>자유학기 활동 소계</b>			<b>85</b>			<b>136</b>										
연계자유학년체	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34)				(34)		(34)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17)		(17)		(17)		(17)	
학기당 과목 수				10		10	10		10		10		10			
체육, 예술, 교양과목 수				3		3	2		2		2		2			
학기별 체육+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68	0	68	51	17	68	68	(17)	68	(34)	68	(17)	68	(17)	

### 3 일과 시간표

시간	1학년	2,3학년	비고	
09:00 ~ 09:05	학급 조회	학급 조회	9시까지 등교	
09:10 ~ 09:55	1교시	1교시	45분 수업	
10:05 ~ 10:50	2교시	2교시		
11:00 ~ 11:45	3교시	3교시		
11:55 ~ 12:40	점심시간(11:45~12:40)	4교시	점심시간(55분) -학년별 분리 시행	
12:40 ~ 13:25	4교시	점심시간(12:40~13:35)		
13:35 ~ 14:20	5교시	5교시	45분 수업	
14:30 ~ 15:15	6교시	6교시		
15:25 ~ 16:10	7교시	7교시		
<b>월</b>	<b>화</b>	<b>수</b>	<b>목</b>	<b>금</b>
6교시	7교시	6교시	7교시	6교시

※ 아침 등교(09:00) 이후 교실에 입실한 경우 지각처리



## IV. 평가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 ..... 21



## IV 평가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

#### 1 2023 자유학기(년)제 운영 및 평가

운영 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 모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자유학기)	연계 자유학년제 (연계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중심 수업</li> <li>•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수업</li> <li>•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수업(토론, 논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 방법)</li> <li>•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 일체화</li> <li>• 피드백을 통한 학생-교사 상호 성장</li> </ul>	
평가 ·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중심 평가</li> <li>• 1년간 일제식 지필평가 미실시</li> <li>• <u>교과성취도 미산출</u></li> <li>• 모든 학생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중심 평가 확대</li> <li>• 일제식 지필평가 횟수 축소,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 권장(학교 자율 결정)</li> <li>• <u>교과성취도 산출</u></li> <li>• 학생의 교과 및 연계 자유학기 활동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대상 학생의 범위는 학교 자율 결정)</li> </ul>
고입 내신	교과성적 미반영	★교과성적 반영

#### 2 지필평가 일정(2023)

1학기	2학기	
지필고사(2,3학년)	지필고사	
	2학년	3학년
6. 27.(화) ~ 6. 29.(목)	12.12.(화) ~ 12.14.(목)	11.21.(화) ~ 11.23.(목)

### 3 1학년 평가 계획

교과	교과수	자유학기제 운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사회, 도덕, 정보, 진로와 직업	11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2023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참고

과목		수행평가	
교과 군	과목	영역	시기
국어		서평쓰기	4월
		국어생활 탐구하기	5월
사회	사회	식판 위 식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	4월
		다시 만난 세계	5월
	도덕	갈등 상황 해결 토의하기	4월
		도덕적 인물 찾아 소개하기	5월
수학		논술평가	4월
		수학주제탐구	4-5월
		수학학습활동	3-7월
과학, 정보	과학	지구 내부 구조 표현	4월
		마찰력의 크기 비교	5월
		다양한 생물 분류	6-7월
	정보	정보사회 살아가기	4월
		자료와 정보 표현하기	5-6월
체육		건강체조활동	4월
		티볼경쟁활동	5-6월
		응급처치(논술형)	6-7월
예술	음악	예술가곡 감상(논술형)	4월
		문화유산 신문 만들기	5월
		장구치며 민요 부르기	6월
	미술	감각의 관계 만들기	3월
		이미지로 소통하기	4-5월
		우리 미술 비평(논술형)	6-7월
영어		소개 글쓰기	4-5월
		여행상품 기획하기	6-7월
		여행상품 홍보하기	6-7월

4 2학년 평가 계획

과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1차		2차		계	논술형 평가	특정 활동 및 산출물	계
	선택형	논술형	선택형	논술형				
국 어	·	·	50	·	50	40	10	50
도 덕	·	·	·	·	0	50	50	100
역 사	·	·	50	·	50	40	10	50
수 학	·	·	40	·	40	50	10	60
과 학	·	·	50	·	50	40	10	50
기술·가정	·	·	50	·	50	40	10	50
체 육	·	·	·	·	0	20	80	100
미 술	·	·	·	·	0	30	70	100
영 어	·	·	50	·	50	40	10	50
한 문	·	·	·	·	0	50	50	100

과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과 군	과목	반영 비율	배점 만점	반영 비율	배점 만점	영역	배점 만점	시 기	
국어	국어	50%	100점	50%	50점	나만의 시집 만들기	20	3월	
						독서 신문 만들기	20	4월	
						독서 감상 말하기	10	4-5월	
사회	역사	50%	100점	50%	50점	세계사 주제 논술	10	4월	
						역사 화폐 제작	30	5월	
						세계사 바로 알기	10	6월	
	도덕	·	·	100%	100점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글쓰기	25	4월	
						사이버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	25	4월	
수학	수학	40%	100점	60%	60점	폭력의 문제와 대처방법에 대한 글쓰기	25	5월	
						수과 식 논술형 문제해결	25	4월	
						다항식과 일차부등식 논술형 문제해결	25	5월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50%	100점	50%	50점	수학탐구활동	10	수시	
						태양계 논술형 평가	20	5월	
						전기와 자기 논술형 평가	20	6월	
	기술· 가정	기술· 가정	50%	100점	50%	50점	식물과 에너지 탐구	10	6월
							쾌적한 주거 환경	20	4월
							생활용품 만들기	10	5월
체육	체육	·	·	100%	100점	친환경 건설 기술	20	4-5월	
						개인 줄넘기	20	3월	
						창작 줄넘기	20	4월	
						플라잉디스크	20	5월	
						플라잉디스크 골프	20	6월	
예술	미술	·	·	100%	100점	논술문 쓰기	20	6월	
						레디메이드	30	4월	
						만다라	35	5월	
영어	영어	50%	100점	50%	50점	스크래치	35	7월	
						올해의 목표 글쓰기	20	4월	
						올해의 목표 말하기	10	4월	
						환경보호 글쓰기	20	5-6월	

한문	·	·	100%	100점	한자 정서	25	3-4월
					어휘의 활용	25	4월
					수업성찰 글쓰기	25	5월
					주제 논술	25	6월

### 5 3학년 평가 계획

과목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1차		2차		계	논술형 평가	특정 활동 및 산출물	계
	선택형	논술형	선택형	논술형				
국 어	·	·	50	·	50	40	10	50
사 회	·	·	50	·	50	40	10	50
역 사	·	·	50	·	50	40	10	50
수 학	·	·	50	·	50	40	10	50
과 학	·	·	50	·	50	40	10	50
기술·가정	·	·	50	·	50	40	10	50
체 육	·	·	·	·	0	20	80	100
음 악	·	·	·	·	0	30	70	100
영 어	·	·	40	·	40	40	20	60
중국어	·	·	40	·	40	40	20	60

과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과 군	과목	1학기 지필 평가	배점 만점	반영 비율	배점 만점	영 역	배점 만점	시 기
국어		50%	100점	50%	50점	독서 일지 쓰기	20	3월~4월
						서평 쓰기	20	5월
						나의 인생 책 소개하기	10	5월
사회	사회	50%	100점	50%	50점	인구 사례분석	20	4월~5월
						경제기사 작성하기	10	5월
						살기 좋은 도시 평가하기	20	6월
	역사	50%	100점	50%	50점	사료분석 글쓰기	20	4월
						선거포스터 만들기	20	5월
우리역사 바로 알기	10	6월						
수학		50%	100점	50%	50점	제공근과 실수 논술형 평가	20	4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논술형 평가	20	5월
						수학탐구활동	10	3~6월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50%	100점	50%	50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20	4월
						기권과 날씨	10	5월
						운동과 에너지	20	4월
	기술· 가정	50%	100점	50%	50점	균형 잡힌 식사 계획 논술	20	5월~6월
						건강 가정 미니북 제작	10	4월
생명기술 윤리	20	4월~5월						



체육			100%	100점	축구 경기기능	30	3~4월
					육상 50m 달리기	20	4~5월
					플라잉디스크 경기기능	30	5~6월
					스포츠건강 독서논술	20	5월
예술	음악		100%	100점	세계 속의 국악	30	3월
					컵타 연주하기	35	4월
					장구 연주하기	35	5월
영어	40%	100점	60%	60점	소개하는 글쓰기	20	4월
					발표	20	5월
					학습수행능력평가	20	3~6월
생활 중국어	40%	100점	60%	60점	중국문화 소개하기	30	4월
					중국노래 부르기	10	5월
					중국어 배움일기	20	3~6월

※ 위 평가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결시생 성적처리

### 1. 10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인정결석,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frac{\text{학생 본인의 응시 고사 점수}}{\text{응시 고사 해당 과목 평균}} \times \frac{\text{결시 고사 결시 과목 평균}}{\text{응시 고사 해당 과목 평균}} \times 1.0$$

단, 지필평가1차, 지필평가2차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시인 경우는 다음 공식에 따른다.

$$\text{해당 학생의 결시과목의 본인 수행평가 원득점} \times \left( \frac{\text{결시과목의 지필평가 학년 평균점수}}{\text{결시과목의 수행평가 학년 평균점수}} \right) \times 1.0$$

-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과2154, '22.18)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2. 8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질병결시)

$$\text{(응시분의 원득점)} \times \frac{\text{(결시분의 학년 해당 교과 평균)}}{\text{(응시분의 학년 해당 교과 평균)}} \times 0.8$$

단, 지필평가1차, 지필평가2차 모두 질병 결시인 경우는 다음 공식에 따른다.

$$\text{해당 학생의 결시과목의 본인 수행평가 원득점} \times \left( \frac{\text{결시과목의 지필평가 학년 평균점수}}{\text{결시과목의 수행평가 학년 평균점수}} \right) \times 0.8$$

3. 당해 지필평가의 해당 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에서 1점을 감한 점수)으로 부여하는 경우
- 가. 미인정 결시
  - 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시
  - 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 라. 소년보호기관, 위탁교(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었으나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V. 학교생활 안내

1. 학교 생활지도 기본규칙 .....	29
2. 출결 관리 .....	31
3. 원격교육 출결 규정 .....	33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35
4. 학생 시상계획 .....	44
5. 고입 학교 구분별 특성 및 반영 지침 .....	45
6. 자유학년제 운영방안 .....	47
7. 학교도서관 운영 .....	53
8. Wee클래스 운영 .....	55
9. 진로진학 상담 안내 .....	56
10. 2023 급식운영 계획 .....	58
11. 급식 시간 운영 및 위생관리 .....	59



## V

## 학교생활 안내

## 1 학교 생활지도 기본규칙

## 1 학생 등교 아침 맞이 생활지도

- 가. 학생 등교 아침맞이 및 교통지도
- 나. 아침 등교 09:00 이후 교실에 입실한 경우 지각처리

## 2 나침반 교육

- ◆ 아침 등교 이후 (09:00~09:05) 각 학년 반별 5분 시청 후 담임교사 조회

## 3 급식지도

- ◆ 1층 행정실 앞쪽에 대기 지도교사 지시에 따라 배식함.
- ◆ 학년별 급식순서 :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는 각반 담임교사가 전달)
  - 각 학년 반별로 순서는 각 학년 반 담임교사에게 알려줌.
- ◆ 학년별 급식 대기 순서 시간은 10분씩 간격을 두고 배식함.

## 4 복장 관련 안내

## 1) 교복 시기별 혼용 기간 안내 (계절에 따라 메신저 홍보)

- 가. 하복 : 학교 교복 및 생활복.
- 나. 춘추복 :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착용
- 다. 동복자켓 : 춘추복 위에 자켓 착용  
(추울 경우 자켓위에 패딩 착용 가능, 자켓 대용으로 후드 짙은 착용 가능)
- ◆ 등·하교 시에 규정된 복장 착용하며 사복은 절대 안 됨. 적발 시 단계별 지도 및 선도처리 함.
- ◆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체육복 착용 등·하교 허용함.

## 2) 체육복

- 가. 하계 체육복 복장
  - ◆ 규정된 체육복만 허용하고 그 외 일반 티셔츠는 허용 안함.
- 나. 동계 체육복 복장
  - ◆ 상의 체육복 안에 생활복, 와이셔츠, 블라우스 허용, 일반 활동이 편리한 티셔츠 착용 가능하나 교내에서 상의 체육복을 탈의하여 사복상태로 교육활동 참여 하지 않도록 합니다.

## 5 실내 정숙 및 청결한 화장실 사용

- 가. 쉬는 시간 층별 복도에서 장난치면서 뛰어다니거나 큰소리를 치지 않도록 한다.
- 나. 층별 공동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 ◆ 화장지 사용은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 ◆ 화장실에서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 화장실의 기물 파손 시 선도처리 및 개인 배상 처리함.

## 6 기본생활지도

- 가. 학교 내에서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말-“사랑합니다.”)
- 나. 화장, 귀걸이, 매니큐어, 파마, 염색, 하지 않도록 한다.  
(미백효과가 없는 선크림만 허용함.)
- 다. 용모 단정 및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한다. (손 씻기 생활화)
- 라. 실내화, 실외화 구분하여 신고 다닌다.
- 마. 학교 등교 이후 담임교사 조회 시간에 휴대폰 제출 종례 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학교생활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대폰 사용을 해야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허락받고 사용 후 제출)

## 7 단계별 생활지도 방법

- 가. 아침맞이 및 교내 생활 중 학교규칙 위반시 교육지도를 받으며 정당한 지도를 함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될 경우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 나. 담임교사는 명렬표에 적발 횟수 기재
  - ◆ 1차 지도- 담임(교과 담당)교사와 학생상담
  - ◆ 2차 지도- 담임교사와 학부모전화상담
  - ◆ 3차 지도- 담임(교과담당)교사와 학부모 학교방문상담
    - 학년부장 및 학생부 지도
  - ◆ 4차 지도-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지도(선도규정-교사지시 불이행)

## 2 출석 관리

### 1.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한다.
- ③ 학적변동 전· 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 받은 (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2. 출석 인정 결석

-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 학생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친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 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⑧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⑨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 3. 질병결석과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 1) 질병결석으로 인한 결석

-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학급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④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2) 미인정결석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③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④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⑤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결석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지각·조퇴·결과

-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과 하교시각(당일 마지막 교시 종료 이후 10분) 사이에 하교한 경우
- ③ 결과 :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에 10분 이상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④ 위의 27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처리한다.
-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처리한다.(같은 날짜에 질병과 미인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을 처리한다.)
-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3 원격교육 출결 규정

#### 1. 출결확인

- ① 콘텐츠나 과제제시형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모두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
- ② 접속 불량, 기기 고장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생은 **상황 발생 즉시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연락하고, 교과 담당 교사가 부여한 당일 대체학습을 3일 이내에 완료 시 출석 인정**  
 예) 메시지 예시 : 3.3.(수) 11001 홍길동 학생은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00교시 00과목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첨부) : 사진을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③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도 시정에 따라 수업 시작 후 10분 이상 늦을 경우 **결과 처리** (등교수업 출결 규정과 동일 처리)  
 예) 1교시 수업 시작 시간이 09:15일 경우 09:25분 정각 이후 출결하지 않을 경우 결과처리  
 ※ **출결 최종 확인 기간(3일, 수업 당일 포함 수업일수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교육부 의무 권고사항** 예) **금요일 수업일 경우 - 화요일까지 최종 출결 확인**
- ④ 출결규정은 학기 시작 후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주부터 규정대로 실시함.

#### 2. 출석 확인 방법

- ① 수업 시작 시점에 해당 교과 교사가 지시한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줌 또는 행아웃 미트 등) 및 채팅, 수업 활동 결과물 제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교과 수업의 원격 수업 접속시간 역시 수업 시작 시간으로 통일.
- ② 웹캠이 없는 학생도 수업 시작 시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 출석 체크 함.
- ③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줌 채팅창을 저장함.(종료 시 자동 저장 기능 활용)  
 → 학생들은 화상 출석만이 아니라 줌 입장과 동시에 채팅창에 출석한다는 댓글을 기록해야 함.

#### 3. 원격 수업 출결처리

- ① 수업에 불참, 또는 **수업 시작 10분 이후 참여한 경우에는 결과 처리함.**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5장 30조)  
 ※ 줌 수업 시작 시점 출석 확인 시 없었을 때  
 : 줌 채팅창의 출석 댓글이 수업 시작 10분 이전에 있어야 출석 처리.
- ② 인터넷 접속 불가, ZOOM(줌) 오류로 인한 미접속 학생의 경우 **수업 시작 10분 안에** 구글 클래스룸 해당 수업에 댓글을 남기거나 담임교사 문자, SNS 연락 등 **학생이 제출한 출결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함.**  
 ※ 학생의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3일 내 최종 확인**)
- ③ 원격 수업 참여시 화상(얼굴 대면), 채팅, 대화(음성)등으로 소통하며 반드시 캠을 켜고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하며,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가 성실하지 않을 경우 결과 처리함.**  
 예) **학생의 수업 태도 참여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
  - 1)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켜지 않거나 천장이나 책상 등 수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 2) 교사의 호명에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
  - 3) 제시한 수업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수업 참여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경우(내복, 잠옷 등)

5) 방역 수칙에 반하여 가정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등

- ④ 교과 교사가 출결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일 이내에 **학생이 제시한** 소명 자료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⑤ 출결 소명자료는 학생이 제출해야 하며 소명자료가 없을 시 결과 처리 함.

#### 4.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시 유의 사항

- ① **초상권 보호 및 언어예절** : 실시간 원격수업 등에서 친구의 모습을 녹화 및 캡처 후 유포 하거나 이를 비방 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과 욕설 및 성적인 언어 등 비정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학교폭력, 수업 방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함
- ② **저작권법 준수** : 학급방(교과방)에 게시된 자료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돕기 위한 자료로 조남중학교 학생들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음. 수업 목적으로 내려받은 자료 또는 수업 영상을 캡처한 사진 또는 재가공한 영상 등을 개인 SNS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하면 저작권법(제25조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③ 학습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망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하거나 수업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5.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등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원격수업 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에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제18조 제1항)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 6.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

-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지필평가는 출석 수업 후 실시
-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수행평가는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가능(이 경우에도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1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진행 절차

종 류	내 용	절 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여행</li> <li>○ 친·인척 방문</li> <li>○ 견학 활동</li> <li>○ 각종 체험 활동</li> <li>○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li> <li>○ 가정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신청&lt;서식 1-1/1-2&gt; <b>1일전</b></li> <li>→ 신청서 검토(학칙 및 세부규정에 따름)</li> <li>→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li> <li>→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li> <li>→ 교외체험학습 실시</li> <li>→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 안전여부 확인</li> <li>→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lt;서식 2-1/2-2&gt; <b>7일내</b></li> <li>→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li> </ul>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신청&lt;서식 3&gt;</li> <li>→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업무관리시스템)</li> <li>→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송부&lt;서식 4&gt;</li> <li>→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li> <li>→ 교환학습 실시</li> <li>→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lt;서식 5&gt;</li> </ul>

### 3 방침

-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가정학습을 포함하여(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해당 학년도 기준 20일 이내로 한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 온라인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대상이 아님.
-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3. 교외체험학습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사전·사후 지도를 강화하여 체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4.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경우엔 별첨
5. 체험학습이 끝난 후 체험학습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됨.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 결재 필요)
8.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9.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형태

1. 가족동반 여행
2. 친인척집 방문
3. 답사·견학 활동
4. 체험 활동
5. 가정학습
6.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년 초** 적응 기간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시험기간(정기고사, 교육청평가 등)
3. 성적 이의 신청 기간(단, 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성적 이의신청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제출 기한 1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 7일 이내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일	신청 기간	1일 기준	20 년 월 일 ~ 월 일			총 ( )일간			
		반일 기준 (4시간 미만)	날짜	20 년 월 일					
	시간		시 분 ~ 시 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 ① 학년 초 적응 기간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교육청평가 등)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성적 이의신청 포기원 제출 시 가능)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O , × )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 ◦ 친·인척 방문( ) ◦ 답사·견학 활동( ) ◦ 체험활동( ) ◦ 가정학습( )								
목적지					(숙박시) 숙박장소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관계			휴대폰			
목적									
교외체험 학습계획									
학생안전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b>동의함</b>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조남중학교장 귀하						보호자 : (인)		학생 : (인)	

------(이하 담임 작성)-----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 명			학 년 반	제 학 년 반 번	
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 )일	신청 기간	1일 기준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반일 기준 (4시간 미만)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 . 조남중학교 ( )학년 ( )반 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미이행의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신청서 제출 기한 1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 7일 이내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 × )
학습형태	가정학습					
장 소	자택 (경기도 시흥시 )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목적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계획	교시	교과	※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본 양식은 1일 예시이며, 2일 이상일 경우 양식 변경 가능)			
	1					
	2					
	3					
	4					
	5					
	6					
학생안전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조남중학교장 귀하 보호자 : (인) 학생 : (인)						

(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번	제	학년 반 번	
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 . 조남중학교 ( )학년 ( )반 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미이행의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

담임	부장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가정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정학습					
제 목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과	교시	교과	※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양식 변경 가능)			
	1					
	2					
	3					
	4					
	5					
	6					
<p>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           (인)           학생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조남중학교장 귀하</p>						

※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신청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 허가 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 단위로 한다. ※ 위탁 희망 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허가여부 통보 ※ 국내에 한함			
위탁희망학교	시도명( ) ( )학교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습계획 및 생활계획				
위와 같이「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조남중학교장 귀하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수 신 :            학교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소속 학교	학교 전화번호	학년 반	담임명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생 관련 참고 사항				
교환 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일간			

위 학생의「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조남중학교장 (직인)

## 4 학생 시상계획(예정)

※공개방식 :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실 게시판

순번	부서/교과	수상명	시행(학기)	참가대상	수상비율	내신반영
1	수학과	창의퍼즐대회	1학기	1학년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	○
2	영어과	영어그림문자만들기대회	1학기	전교생	학년별 참가자의 20%이내	○
3	과학과	과학탐구대회	1학기	전교생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	○
4	음악과	음악경연대회	1학기	전학년	참가자의 20% 이내	○
5	진로진학부	나의꿈발표대회(1학년), 미래명함만들기대회(2학년), 진로포트폴리오만들기대회(3학년)	1학기	전교생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	○
6	학생안전부	표창장(모범부문, 선행부문, 봉사부문, 준법부문, 예절부문)	1학기	전교생	학년별 정원 전체의 20%이내	○
7	수학과	큐브대회	2학기	1학년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	○
8	민주시민 교육부	명예로운학생상	2학기	3학년	졸업사정	×
9	민주시민 교육부	글짓기대회	2학기	전교생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	○
10	학생안전부	표창장(모범부문, 선행부문, 봉사부문, 준법부문, 예절부문)	2학기	전교생	학년별 정원 전체의 20%이내	○

\*모든 수상 계획은 학교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고입 학교 구분별 특성 및 반영 지침

### 1. 학교 구분별 특성

종 류		특 징		
전 기 학 교	마이스터고	최고의 교육으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고 ‘졸업 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파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 으로 최고의 기술명장(Meister)를 육성 - 수원하이텍고, 경기평택기계공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인천해사고 등		
	특목고	과학계열	경기북과학고	
		예술계열	경기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 고양예고	
		체육계열	경기체육고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안산지역 >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국제비지니스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안산공업고	< 시흥지역 > 경기자동차과학고 군자디지털과학고 경기스마트고 한국조리과학고	< 안양지역 > 안양공업고 근명고 안양여자상업고 평촌공업고 평촌경영고	
후 기 학 교	일반계고	-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과 일반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을 연마 하는데 중점을 둠. -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어고	- 수원외고, 성남외고, 안양외고, 과천외고, 동두천외고, 경기외고, 고양외고, 김포외고		
	국제고	- 고양국제고, 청심국제고, 동탄국제고		
기타고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학 력 인정고	진영정보고(부천), 부천실업고(부천), 연희미용고(서울), 북인천정보고(인천)		

## 2. 내신성적 반영 지침

### 가. 내신성적 반영 기준과 시기

반영기준	적용대상	반영시기
봉사활동	공통	3학년 10월말까지
학교활동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공통	3학년 10월말까지
출결상황	공통	3학년 10월말까지
교과활동상황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일반고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 나.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구분 (반영비율)	교과활동상황(75%)			비교과활동상황(25%)			비 고 (100%)
	일반교과(60%)		체육·예술 교과 (15%)	출결상황 전 학년 (10%)	봉사활동 전 학년 (10%)	학교활동 전 학년 (5%)	
	2학년 (30%)	3학년 (30%)					
반영 점수	60점	60점	30점	20점	20점	10점	200점

### 다. 출결상황 성적 반영(미인정 결석만 산출,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계산)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이상	비 고
비 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 라. 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3개년간)

시간	15시간 이상	14	13	12	11	10	9	8	7시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 마. 학교활동 실적 성적 반영

점수	기본점수	수상실적	자치회임원활동
10점	8점	1학기당 1개 0.5점	월 평정점 0.1점

## 3. 주의 사항

가. 이중 지원 금지 : 전기학교는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의 제한 :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①항)

다. 마이스터고 전형은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말까지로 한다.

## 6 자유학기(년)제 운영방안

### 1 목적

- 1)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자유학기(년)제의 취지를 연계·확대하여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 시도
- 2) 학생중심 수업 개선을 통해 인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 함양

### 2 방침

- 1) 자유학기(년)제 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1학년은 자유학년제, 2, 3학년은 연계자유학년제로 운영한다.
- 2)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학생중심 수업 방법 개선, 과정중심 평가 등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 3) 학생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의 과정평가 확대·실천을 위해 1학년은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00% 수행평가 실시 및 학생 성장을 관찰한 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 3 추진내용

학기	자유학년		연계 자유학년		연계 자유학년	
	1-1	1-2	2-1	2-2	3-1	3-2
자유학기 현황	자유학기	자유학기	연계자유학기	연계자유학기	연계자유학기	연계자유학기

#### 1) 자유학년제 시간표 운영 모형

1학년 자유학년																		
○ 1학기 85시간 운영						○ 2학기 136시간 운영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2	주제	일반	동아리				동아리	주제	일반				일반	동아리	주제			
3	주제	일반	동아리	동아리	주제	일반				일반	동아리	주제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			
4																		
5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주당 5시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주당 8시간)											
6																		
7	X			진로 탐색			X			X			X					

2학년 연계 자유학년

○ 1학기 51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2					
3					
4	동아리 (스포츠)		연계 자유학기 활동 (주당 3시간)		
5					
6	주제선택				
7					

○ 2학기 51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2					
3					
4	동아리 (스포츠)		연계 자유학기 활동 (주당 3시간)		
5					
6	주제선택				
7					

3학년 연계 자유학년

○ 1학기 51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2					
3					
4	동아리 (스포츠)		연계 자유학기 활동 (주당 3시간)		
5					
6	주제선택				
7					

○ 2학기 51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2					
3					
4	동아리 (스포츠)		연계 자유학기 활동 (주당 3시간)		
5					
6	주제선택				
7					

2) 2023 자유학기(년) 활동 운영 계획

가) 1학년 자유학년

구분 \ 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주당 운영시수	1	2	·	2	5	1	2	3	2	8
운영 프로그램수	1	11	·	11	23	1	11	13	11	36

나) 2학년 연계 자유학년

구분 \ 학기	1학기					2학기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주당 운영시수	·	2	·	1	3	·	2	·	1	3
운영 프로그램수	·	2	·	12	14	·	2	·	12	14



다) 3학년 연계 자유학년

구분 \ 학기	1학기					2학기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계
자유학기 활동										
주당 운영시수	·	2	·	1	3	·	2	·	1	3
운영 프로그램수	·	2	·	11	13	·	2	·	11	13

3)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운영 현황

구분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운영요일	1반~4반 : 월 2,3교시 5반~8반 : 수 2,3교시 9반~11반 : 금 2,3교시	1반~4반 : 수 2,3교시 5반~8반 : 금 2,3교시 9반~11반 : 월 2,3교시
1인당 참여프로그램	2개	2개
운영 기간	2023. 3. 2. ~ 2023. 7. 19.	2023. 3. 2. ~ 2023. 7. 19.
주당운영시간	2시간씩*1일=2시간	2시간씩*1일=2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2시간=34시간	17주*2시간=34시간

■ 1학년 1학기 주제 선택 운영 프로그램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 교사	시간 (학년)
주제 선택 활동	소통으로 여는 국어	패들렛, 구글클래스, 미리캔버스, 온라인 설문 폼을 활용한 언어 표현활동하기	박○○	월 2,3교시 (1~4반)
	꿈과 끼를 키우는 수학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고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조○○	
	토론이 있는 교실	다양한 자료(소설, 신문기사, 영상)를 활용하여 토론의 기초를 익히고 글쓰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본다.	최○○	
	수학과 함께하는 여행	생활 속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고 그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 수학을 통한 추론, 의사소통, 창의 융합 역량을 기른다.	차○○ 지○○	
	나도 소설가반	소설을 감상하고 타인과 소통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간단한 소설작품을 창작해 본다.	김○○	수 2,3교시 (5~8반)
	종이접기반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만들어 도형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하기	김○○	
	책임기반	다양한 분야의 책임기 활동을 통해 언어 능력 향상 및 생각할 수 있는 힘 기르기	서○○	
	생각하고 만지는 수학	다양한 만들기를 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 개념 알아보기	장○○ 송○○	금 2,3교시 (9~11반)
	문학으로 가꾸는 삶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후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기르기	염○○	
	수학놀이	수학적 요소가 들어있는 놀이를 찾아 탐구하기	임○○	
전래동화책 만들기	자료조사와 정확한 배경 지식에 기반한 전래동화 창작	박○○		

■ 1학년 1학기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 교사	시간 (학급)
동아리 활동	나는 문화유산 영어해설사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전○○	수 2,3교시 (1~4반)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막연하거나 반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과 동의어일 수도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되는 것들의 틀을 흔들어 보자.	김○○	
	굿모닝 팝스	팝송으로 영어권 나라의 문화와 표현 배우기	박○○	
	동행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과 태도를 갖추기	고○○	
	스크린 마니아	주제별 영화를 감상하고 등장인물, 배경을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손○○	금 2,3교시 (5~8반)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막연하거나 반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과 동의어일 수도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되는 것들의 틀을 흔들어 보자.	김○○	
	나는 문화유산 영어해설사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전○○	
	나만의 보석 작품 만들기	나만의 보석 십자수 작품을 완성해보며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인내심 키우기	조○○	
	굿모닝 팝스	팝송으로 영어권 나라의 문화와 표현 배우기	박○○	월 2,3교시 (9~11반)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막연하거나 반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과 동의어일 수도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되는 것들의 틀을 흔들어 보자.	김○○	
스크린 마니아	주제별 영화를 감상하고 등장인물, 배경을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손○○		

■ 1학년 2학기 예술체육활동(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그램

순번	수업명	활동내용
1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2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3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4	보드게임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5	여가스포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해보고 습관화한다.
6	방송댄스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7	홈트레이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배워 유연성, 근력 등 체력 요소를 기른다.
8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9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10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11	보드게임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12	방송댄스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13	홈트레이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배워 유연성, 근력 등 체력 요소를 기른다.



## 나) 2학년 1학기 연계 자유학기 운영 현황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금요일	화요일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	
운영 기간	2023.03.02.~2023.07.19.	2023.03.02.~2023.07.19.	
주당운영시간	2시간*17주=34시간	1시간*17주=17시간	총51시간
운영 교과	국어, 과학	스포츠클럽	

## ■ 2학년 1학기 주제선택 운영 프로그램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1	한 학기 한 권 읽기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고, 심화활동을 통해 사회와 자신에게 적용해본다.
2	생활 속 전기와 자기	다양한 전기와 자기 실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의 원리를 이해해보고 나만의 전동기를 설계하여 구현함.

## ■ 2학년 1학기 동아리 활동(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그램

순번	수업명	활동내용
1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2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3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4	보드게임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5	방송댄스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6	홈트레이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배워 유연성, 근력 등 체력 요소를 기른다.
7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8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9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10	보드게임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11	방송댄스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12	홈트레이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배워 유연성, 근력 등 체력 요소를 기른다.

다) 3학년 1학기 연계 자유학기 운영 현황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금요일	화요일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	
운영 기간	2023.03.02.~2023.07.19.	2023.03.02.~2023.07.19.	
주당운영시간	2시간*17주=34시간	1시간*17주=17시간	총51시간
운영 교과	국어, 사회	스포츠클럽	

■ 3학년 1학기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1	책으로 생각 나누기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하기
2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경제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사고력 키우기

■ 3학년 1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프로그램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1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2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3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4	홈트레이닝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5	보드게임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6	방송댄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배워 유연성, 근력 등 체력 요소를 기른다.
7	축구	축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8	농구	농구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공격과 수비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연습한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9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단식과 복식 경기의 규칙을 알고 수행한다. 민첩성 및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른다.
10	보드게임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전략을 구상하는 창의력 증진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순발력을 기른다.
11	방송댄스	방송댄스 및 힙합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연습한다. 몸짓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미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른다.

## 7 학교 도서관 운영

### 1. 목적

- 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 기기, 시설을 갖추고 사서교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한다.
- 나) 학생들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탐색 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 2. 운영 방침

#### 가) 기본규정

- 이용자의 범위는 조남중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한다.
- 자료 열람 및 대출 활동을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 관내 열람 및 관외 대출을 실시한다.
- 도서 분실 및 파손 시 동일도서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도서가 절판으로 인해 구입이 불가할 때는 도서관에서 지정해주는 유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열람 및 이용시간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수업가능시간
평일 08:40 ~ 16:40	상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적 학습시간</li> <li>◦ 창의적 재량활동</li> <li>◦ 신청교과 수업시간</li> </ul>

#### 다) 도서 대출 권수 및 기간

대상	1회 대출권수	대출기간	비고
학생	2권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정지</li> <li>◦ 반납 후 연장 대출 가능</li> <li>◦ 교사의 경우, 교재 활용으로 기간 연장</li> </ul>
교사	10권	30일	
학부모	2권	7일	

#### 라) 대출 불가 도서

- 귀중도서, 고서, 희귀본 등 특별 취급도서
- 각종 사전류, 연감, 도감 및 참고도서
- 정기간행물
- 멀티미디어 자료 및 시청각자료
- 기타 사서의 판단에 따른 자료

## 2023학년도 조남중학교 추천도서 목록

주제	순번	도서명	저자	출판사
문학	1	페인트	이희영	창비
	2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3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문학동네
	4	완득이	김려령	창비
	5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청년사
	6	독고슴에게 반하면	허진희	문학동네
과학 수학	7	수학 콘서트 플러스	박경미	동아시아
	8	재밌어서 밤새 읽는 수학이야기	사쿠라이 스스무	더숲
	9	수학이 보인다 art/ life/ history	강문봉	경문사
	10	십 대, 미래를 과학하라	고재현 외	청어람미디어
	11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북센스
역사 사회	12	지리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육성일	맘에 드림
	13	세계지리 세계화와 다양성	안재섭	시그마프레스
	14	이슈에게 배우는 민주주의	박혁	맹앤앤
	15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16	제대로 한국사 1~10	전국역사교사모임	휴먼어린이
예술	17	이지 클래식	류인하	42미디어콘텐츠
	18	십대 영화로 세상을 논하다	이임정 외	초록비책공방
	19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	박소영	구름서재
	20	클래식과 함께하는 사회탐구	권재원	다른
철학	21	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철학사전	황진규	나무생각
	22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날까	얼힙	뜨인돌
진로	23	십대를 위한 두근두근 N잡 대모험	백다은	팜파스
	24	어떻게 되었을까 시리즈 세트전 40권	캠퍼스멘토	캠퍼스멘토
	25	10대가 알아야 할 미래 직업의 이동	박종서 외	한스미디어
	26	4차산업혁명과 미래 직업이야기	서지원	크레용하우스
	27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하종강	나무야
	28	저 청소일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 8 Wee클래스 운영

### 가 목적

- 정서불안, 대인관계 미숙, 학습 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 위기상황에 노출 되어 있는 학생들의 맞춤형 서비스 상담 활동 제공
- 상담 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과 자기이해, 자기성장을 통한 건강한 인성을 위한 성장 지원

### 나 방침

- 대상 : 전교생 희망 학생 누구나 가능
- 학생 : 상담신청서 작성하여 사전에 예약
  - 상담 일정 조정 후 상담 일정 확인서 교부
  - 교과담임교사와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학부모 : 전화로 예약 가능한 시간 확인 후 가능

### 다 상담활동 내용

상담 활동 영역	개인 상담, 위기 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또래 상담
개인 상담	학교 부적응,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습문제, 친구 및 이성문제, 흡연문제, 따돌림 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약물·오남용 문제, 우울, 자해, 자살 문제, 인터넷 중독문제, 학교폭력 문제, 성폭력 등
집단 상담	친구관계 향상, 대인관계 어려움, 학교폭력 예방, 솔리언또래상담, 비폭력대화법 등(대상에 따라 소규모 집단상담운영)
심리 검사	MMPI, SCT, HTP, K-WISC-V, TCI, Rorschach Test
학부모 집단 상담	MBTI로 내 자녀 이해하기(학교생활, 대인관계, 성격유형)

- 상담시간 : 09:15~ 16:20 (예약 상담제)
- 전화번호 : 031-490-4808
- 전문상담교사 : 진주은
- Wee클래스 위치 : 1층(학부모 상주실 옆)

### 라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추진 프로그램	실행 방법	시 기
또래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희망 학생	4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대상 : 부적응 학생	6월
자아 성장 프로그램	▪ 대상 : 희망 학생	3월, 10월, 11월
MBTI를 통한 자녀 이해하기	▪ 대상 : 희망 학부모	필요시
MBTI(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대상 : 희망 교사	
종합심리평가(Full Psychological Evaluation Battery)	▪ 대상 : 희망 교사, 학생, 학부모	

## 9 진로진학 상담 안내

### ■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란?

=>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실행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평생에 걸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되는 경험의 총체 => **행복한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

### ■ 조남중 진로진학상담안내

- 대 상 : 전교생 희망 학생 누구나 가능
- 학 생 : 상담신청서 작성하여 사전에 예약  
→ 상담 일정 조정 후 상담 일정 확인서 교부 → 교과담당교사 확인서 제출

온라인 개인상담	개인상담 방법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카톡상담, 전화상담, 학교홈페이지 진로진학 상담실 등	
	카카오톡	카카오톡 검색창에 “조남중 진로진학상담실” 검색 후 → “조남중 진로진학상담실” 채널 친구 추가 → 공지예 있는 진로진학상담 기초조사(필수) → 1:1 채팅창을 통해 상담 진행	
	전화상담	진로전담교사 전화번호 ☎ : 031-490-4845(직통)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시간 예약 후 해당 시간에 전화 상담 진행)	
	학교홈페이지 상담실	조남중학교 홈페이지->상담실 안내->사이버 상담실	
이용대상	본교 학생 및 학부모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6:40		

- 학부모 : 전화로 예약 가능한 시간 확인 후 가능

### ■ 진로 및 진학관련 유용한 사이트

분류	공공기관	주소
진학활동	경기도진학지원센터	<a href="https://jinhak.goedu.kr/">https://jinhak.goedu.kr/</a>
	대교협	<a href="http://www.kcue.or.kr/">http://www.kcue.or.kr/</a>
진로활동	커리어넷(교육부 소속 다양한 진로 정보)	<a href="http://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a>
	한국고용정보원	<a href="http://www.keis.or.kr/">http://www.keis.or.kr/</a>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 href="http://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a>
	한국청소년상담원	<a href="http://www.kyci.or.kr/">http://www.kyci.or.kr/</a>
체험활동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a href="http://www.gysc.or.kr/">http://www.gysc.or.kr/</a>
	창의체험통합정보넷	<a href="http://www.crezone.net/">http://www.crezone.net/</a>

분류	공공기관	주소
심리검사	청소년 워크넷	<a href="http://www.work.go.kr/youth">http://www.work.go.kr/youth</a>
	한국가이던스	<a href="http://www.guidance.co.kr">http://www.guidance.co.kr</a>
자격증	큐넷	<a href="http://www.q-net.or.kr">http://www.q-net.or.kr</a>
대학진학정보	대학진학정보센터	<a href="http://www.Univ.kcue.or.kr/">http://www.Univ.kcue.or.kr/</a>
	어디가	<a href="https://www.adiga.kr/">https://www.adiga.kr/</a>
직업알기	한국직업사전	<a href="https://bit.ly/2YJw6WJ">https://bit.ly/2YJw6WJ</a>
	한국직업전망	<a href="https://bit.ly/2SKDFIW">https://bit.ly/2SKDFIW</a>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 href="http://www.krivet.re.kr">www.krivet.re.kr</a>

📍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북

- 고려대 [https://oku.korea.ac.kr/oku/cms/FR\\_CON/index.do?MENU\\_ID=770](https://oku.korea.ac.kr/oku/cms/FR_CON/index.do?MENU_ID=770)  
 동국대 <https://ipsi.dongguk.edu/admission/html/rolling/book.asp>  
 서울대 <http://admission.snu.ac.kr/under/announcements>  
 성균관대 [https://admission.skku.edu/ipsi/ipsidata\\_list.htm](https://admission.skku.edu/ipsi/ipsidata_list.htm)  
 연세대 <http://ibook.yonsei.ac.kr/viewer/C7UQTEK2PX8L>  
 인하대 [https://admission.inha.ac.kr/cms/FR\\_CON/index.do?MENU\\_ID=260](https://admission.inha.ac.kr/cms/FR_CON/index.do?MENU_ID=260)

## 10 2023 급식운영 계획

### 1. 무상급식 및 각종 지원사업

항 목	지 원 기 준	비 고
무상급식	인원수*185일* 3860원	교특+도비57.03%+시보조42.97%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인원수*185일* 260원	우수 농산물차액지원
시흥쌀 지원사업	인원수*185일간*51원	시흥시 친환경쌀(햇토미)
우수축산물지원사업	연간, 1등급 우수축산물	3등급가격으로 1등급이상 공급
전통장류 공동구매	연간, 시흥시급식지원센터관리	NON-GMO 전통장류 차액지원
수산물 공동구매	연간, 시흥시급식지원센터관리	수산물규격관리강화, 방사능허용기준감시

### 2. 무상급식비 구성

구분		학생수		비고
		801~900명	901~1000명	
식품비	중학생	3600	3520	- 학생수 변동 및 기타 급식단가 인상 시 경기도교육청 지정단가로 적용 - 교직원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 지정단가 (‘23년 식품비, 운영비, 지자체 지원금에 물가상승분 적용)
운영비		350	340	
지자체		311	311	
계		4261	4171	
계	교직원	5490	5490	

### 3. 식단구성 기본원칙

- 1) 전통식문화(食文化)의 계승. 발전, 우리 전통조리법을 기본으로 새로운 식단 등 접목시도
- 2)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친환경식재료 이용
- 3) 인스턴트, 냉동식품 사용억제(사용 시 국산원료, 좋은 재료의 구성비율 등 확인)
- 4) 식단 영양량 표시제 시행중(학교홈페이지에 주간식단 및 당일식단 사진 매일게시)
- 5) 1食당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주요영양소에 대한 영양량공지(학교홈페이지)
- 6) 한국 청소년 절대부족영양소(v.c)생과일 주3회 이상 공급예정(점차 매일 공급 늘릴 예정)

### 4. 학교급식파업 혹은 감염병 유행 시 급식제공방안

	파업 기간	대 책 방 안	비고
예고 파업	단기간 (2일 이하)	전체 완제품 급식 실시. 급식용으로 승인된 완제품 중 급식품 계약 품목에 없더라도 식품비 기준에 맞추어서 빵 또는 떡, 과일, 요구르트, 우유 등을 조달하여 대체 급식 실시.	비예고 파업일 경 우 : 단축수업
	장기간 (3일 이상)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도시락 지참.	

\* 감염병의 유행으로 정상급식이 불가할 경우 **간편식(일품음식), 대체식(빵, 음료) 제공**

## 11 급식 시간 운영 및 위생관리

### 1. 현재 급식 시간 운영

#### 가. 학생 급식 지도

##### ※ 학생 간 접촉 최소화 방안(식당 배식)

- 입구, 출구 변경(입구 2곳, 출구도 2곳으로 분산- 학생 간 접촉 최소화)
- 바닥동선 따라가기, 재입장 금지(퇴식구로 입실금지)
- 배식대기 중 대화로 인한 비말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투명가림막 설치예정
- 식사 중 대화 자제, 식사 후 식기 반납후 이동, 퇴실
- 식탁칸막이는 방역인력 지원시까지 이용(이후 철거)
- **시차배식(1학년 3교시 후, 2,3학년 4교시 후/ 식사속도고려 및 인원수 적정분배)**
- **먹고 일어난 자리는 소독시행(좌석 이용 겹치므로)**

### 2. 급식 전담 인력 위생관리

- (손 씻기·소독)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손 씻기, 70% 에틸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를 용법에 맞게 사용
  - (위생장갑 사용) 식품 취급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용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고무장갑(라텍스) 사용,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위생복장 착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 착용
  - (마스크 사용)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해 급식 전 공정에서 마스크 착용(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상시 착용), 배식시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 착용
  - (휴게실) 주기적으로 충분한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유지, 휴게실 내부 및 사물함 등 손잡이 수시 소독,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 ※ 휴게실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연내 확장개선공사 고려 중

### 3. 기타 시설 위생관리

- 가. 급식소 정기 방역(학교방역과 더불어 매월 최소1~2회)
- 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연2회/ 시흥교육지원청 주관)
- 다. 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소독 수시 실시
- 라. 식당 출입문 손잡이, 정수기, 식탁, 의자 배식대 등 세척 및 소독 실시





## VI. 학부모 연수

1.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63
2. 봉사활동 운영 안내 ..... 65
3. 불법찬조금 학부모 연수 ..... 68
4.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69
5. 아이엠 스쿨 설치 및 사용법 안내 ..... 70
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 72
7. 안전교육 ..... 73
8. 자녀에게 알려주는 성교육 ..... 76
9.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 78
10.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안내 ..... 79
11. 감염병 예방교육 ..... 80
12.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83
13.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84
14. 정보통신윤리 교육 ..... 85
15. 장애 이해 교육 ..... 86
16.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 91
17. 조남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 93



## 1.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 2. 학교폭력의 주요 특징

- 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시 피해자로 =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오며 순환된다
- 나.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이 주를 이룬다
- 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능적인 정신적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
- 리.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 마. 사회 문화적인 모방범죄(매스컴의 영향) 증가하고 있다.
- 바. 저 연령화 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상시 특별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 사. 성폭행 및 동성간 성폭행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 3. 학교폭력 발생요인

- 가. 개인 심리적인 요인: 공격적인 성향, 자신감
- 나. 가족적 요인: 가족의 불화, 빈곤, 가정폭력
- 다. 학교 환경적 요인: 편견, 교사와의 관계, 경쟁
- 라. 사회 환경적 요인: 매스컴, 유해환경, 향락 산업

### 4. 학교폭력의 후유증 유형

< 우울증, 정서적 불안, 자살충동 및 시도, 신체증상, 복수심과 또다른 폭력, 과장된 행동, 의욕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학교 등교 거부, 정신분열 등>

### 5.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 가. 사이버 자료: 이메일 받은 내용, 채팅한 내용, 게시판의 글, 그림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 나. 핸드폰 자료: 문자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 메시지 보관 및 녹음
- 다. 사진 자료: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수 있는 것들
- 라. 녹취: 상대방의 말 녹음
- 마. 진술서 기록: 폭력 상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

### 6. 피해학생 대처 방법

- 가. 도움 청하기: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도움 요청
- 나. 자리 피하기: 위험한 자리 피하기(사전차단)
- 다. 자기주장 표현하기: “그만해”, “하지마”라고 부드럽우며 단호하게 말하기
- 라. 자신 돌아보기: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 살펴보기

### 7. 가해학생 대처 방법

- 가. 입장바꿔 생각하기: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심정, 고통 생각하기
- 나. 결과 예측하기: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와 책임 예측하기
- 다. 현명하게 화 다스리기: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찾기
- 라. 도움 요청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 요청

### 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 필요

- 가. 흡연·음주 금지
- 나. 절도 및 단체 행동 금지
- 다. 교내 우범지역 및 밀폐된 공간 등으로 이동 금지
- 라. 금품 및 물품 빌리지 않기
- 마. 장난이란 핑계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 및 유사 행위 근절
- 바. 타 학급 및 타 학교 찾아가지 않기
- 사. 선생님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2020.3.1. 이후 시행되는 현행 법률)

구분	내용 (2020.3.1.부터 시행되는 조항)
사안 처리 절차 (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회부 →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학교장 자체해결제 (2019.9.1.부터 현재까지 시행)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 고,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b>학교의 장은 학교폭 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b> 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요건: 4개 모두 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관	2020.3.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b>시흥교육지원청의 학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b> 로 이관되어 운영 됩니다.
재심 청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b>행정심판으로 일원화</b> )
생활기록부 기재 (가해 학생)	2020.3.1.부터 가해 학생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에 한하 여 <b>조건부로 기재가 1회 유보</b> 됩니다. (단, 기준 년도까지 누적하여 1회)

▶ 맺는 말씀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시어 자녀들이 학교폭력  
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서 학교와 함께 지도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 연락처: 학생안전부(031-490-4861, 4860, 4838)



## 2. 봉사활동 운영 안내

### 1. 봉사활동 기본방침

가. 2023년 현재 중학교 2,3학년 재학생들은 3년간 봉사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받습니다. (1학년은 추후 2023학년도 내신성적 반영지침 공문이 내려오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예정.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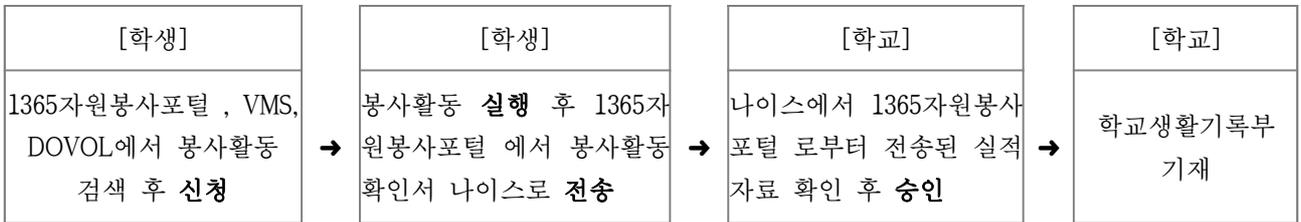
나.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올해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1,2,3학년 4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교육과정 외에 자율로 편성하는 활동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께서 모집 또는 지도하며, 한 학생이 여러 개의 봉사활동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당해 년도 20시간 이내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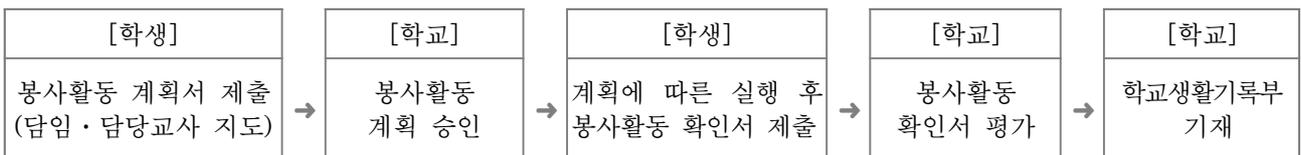
라.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1) 봉사활동을 검색-신청-실시-1365에서 확인-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해야 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봉사활동 절차



마.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1)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봉사활동 실시 후 해당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1)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하니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우리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1)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2)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3)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4)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동시간, 휴식시간 등은 인정 안됨). 단,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1365.go.kr">http://www.1365.go.kr</a>	<a href="http://www.vms.or.kr">http://www.vms.or.kr</a>	<a href="http://dovol.youth.go.kr">http://dovol.youth.go.kr</a>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4 2023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한 시간만큼 봉사시간 부여함)

연번	활동내용	인원	기간	하는 일	연간 인정시간 (최대)		비고
					1학기	2학기	
1	학교 전체 분리수거 도우미	추후 선발	매일 방과후 30분	학교 분리수거	10시간	10시간	학기당 10시간
2	학급 분리수거	학급별 1명	연중	학급 쓰레기 분리수거	5시간	5시간	학급별 1명
3	핸드폰 관리 도우미	학급별 1명	연중	학급 핸드폰 관리	5시간	5시간	학급별 1명
4	에너지 절약 도우미	학급별 1명	연중	문단속, 전등, 에어컨, 멀티기자재 관리	5시간	5시간	학급별 1명
5	교통안전 지도 도우미	추후 선발	매일 아침 08:30~ 09:00	아침 안전 도우미	10시간	10시간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6	배식 도우미	학급당 10명	연중 점심시간	전교생 배식도우미	5시간	5시간	
7	자치법정 도우미	추후 선발	연중	자치법정	5시간	5시간	연간 동일학생 운영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8	학생주도행사 서포터즈	추후 선발	연중	학교 행사 도우미활동	10시간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9	학교 신문 제작 도우미	추후 선발	연중	학교 신문 제작 관련 인터뷰 및 신문기사 작성	10시간		연간 동일 학생 운영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10	교과서 도우미	추후 선발	해당시기	교과서배부	5시간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11	학교도서관 운영 도우미	추후 선발	연중, 점심시간	도서관 행사, 장서정리	5시간	5시간	연간동일학생운영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12	방송 도우미	추후 선발	매일 일과중	학교 행사 방송지원	5시간	5시간	연간 동일학생 운영 <방송 상시 지원>
13	체육 서포터즈	추후 선발	연중	스포츠클럽, 체육합마당 서포터즈	10시간		
14	또래상담 도우미	추후 선발	연중	Wee클래스 행사지원 및 또래상담	5시간	5시간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15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래도우미	8명	매일 일과중	통합교육 지원	5시간	5시간	해당 학급당 1명 (매일 일과중 상시 지원)
16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봉사 나눔	추후 선발	해당시기	행사도우미, 캠페인 활동	5시간	5시간	연간 동일학생 운영 실시하는 날 참석학생 대상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17	미술 행사 도우미	추후 선발	해당시기	전시 준비, 행사 지원	10시간		연간 동일학생 운영 출석부를 바탕으로 봉사시간 부여

**5 경기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 문의**

- 1365자원봉사포털(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1365자원봉사포털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031) 312-7792
- VMS(경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대표번호 031-213-8551 VMS 시흥지역관리본부 031-404-4347
- DOVOL(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

### 3. 불법찬조금 근절 및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손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손지임

#### ●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구분	학 교 발 전 기 금	불 법 찬 조 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회관등

#### [불법찬조금 신고처]

- 시흥교육지원청 : <http://goesh.kr> → 사이버신고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http://www.ti.or.kr)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http://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mailto:hakbumo@hanmail.net))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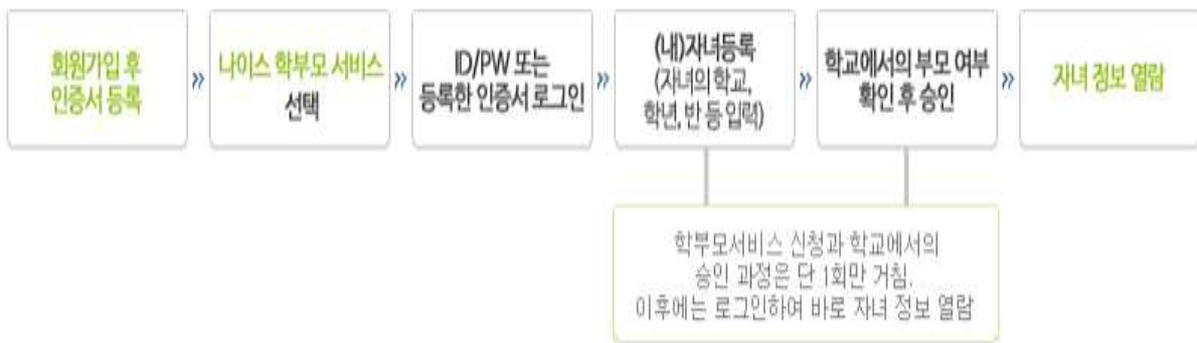


## 4.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1 학부모서비스란?

학부모서비스는 열람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 의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2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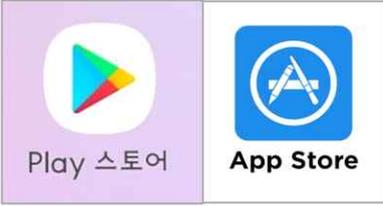


### 3 학부모서비스 통한 열람 가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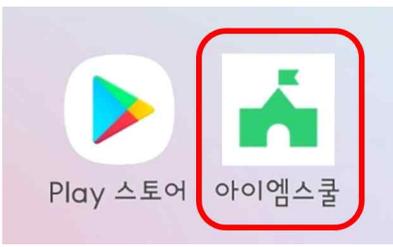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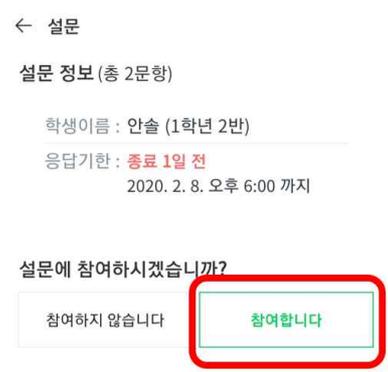
구 분	서비스 내역
학생정보(15종)	시간표, 출석부(출석현황, 출석상세조회),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비납입현황, 성적, 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성적분석(교과평가, 향상도, 고사별점수, 성적변화), (내)자녀등록, 자녀정보조회
학생생활(19종)	학교안내(기본정보, 정보공시, 학교환경정보), 학사일정(연간일정, 월간일정), 식단표(월간식단, 주간식단), 가정통신문, 과목및담당교사, 주간학습, 방과후학교(신청현황, 출석조회),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실신청, 돌봄교실신청현황), 학교생활통지표, 개인별 맞춤학습,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봉사활동내역, 진로활동내역
학생건강(11종)	건강기록부, 자가측정, 신체활동(활동처방, 현재상태, 활동분석), 스포츠클럽, PAPS(평가결과, 평가결과이력, 통계분석, PAPS지수), 예방접종내역
학생상담(3종)	공지사항, 신청및조회(선생님과 의상담, 상담내역)
학생교육(20종)	학업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학업지도, 전출입절차및방법, 학업지도관련사이트, 학업지도게시판), 인성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이해하기, 사이버공간이용방법, 인성지도상담), 진학지도, 진로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진로지도, 진로검사및진로정보), 특수아지도(영재아지도, 장애아지도, 학습부진아지도), 에듀넷학습정보(교과학습평가자료, 교과주제별학습자료), 학원교습소안내, PAPS학습모형
정보제공(6종)	학습자료(교외학습, 교내학습, 진로상담), 대입전형자료(자료제공현황, 상세제공자료), 홍보자료

## 5. 아이엠스쿨 설치 및 사용법 안내(가정통신문, 급식메뉴)

### ■ '아이엠스쿨' 설치 및 회원가입 방법

		
<p>1) Play 스토어 실행 (아이폰은 앱 스토어)</p>	<p>2) '아이엠스쿨' 검색 후 [설치] 버튼 선택</p>	<p>3) 아이엠스쿨 앱 아이콘 선택</p>
		
<p>4) 회원가입 계정 선택 (카카오톡, 페이코, 페이스북, 네이버, 휴대전화번호 중 택 1)</p>	<p>5) 회원가입 정보 입력, 휴대폰 인증 후 [가입하기] 버튼 선택</p>	<p>6) [만나러 가기 &gt;] 버튼 선택</p>
		
<p>7) 자녀 이름 입력 후, 학교명 검색</p>	<p>8) 조남중학교 검색 후 [선택] 버튼 선택</p>	<p>9) 학년, 반 선택 후 [완료] 버튼 선택</p>
		
<p>10) 성별, 동의란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 &gt;] 버튼 선택</p>	<p>11) [저장 후 시작 &gt;] 선택 (주변 관심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명을 검색하세요.)</p>	<p>12) [시작하기 &gt;] 버튼 선택</p>

■ 모바일 설문 응답/ 가정통신문 회신 방법

		
<p>1) 아이엠스쿨 앱 아이콘 선택</p>	<p>2) 자녀 이름 확인 (다자녀일 경우 자녀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p>	<p>3) [설문/메시지] 메뉴 선택</p>
		
<p>4) 응답할 설문카드의 [참여하기 &gt;] 버튼 선택</p>	<p>5) [참여합니다.] 선택 후 문항별 답변 선택</p>	<p>6) [제출하기] 버튼 선택</p>

■ 모바일 설문 응답/ 가정통신문 회신 수정하기

※ 설문 응답 수정은 응답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응답이 최종으로 제출됩니다.

		
<p>1) [설문/메시지] 메뉴 선택</p>	<p>2) 수정할 설문카드의 [참여하기 &gt;] 버튼 선택 (다자녀일 경우 자녀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p>	<p>3) 수정할 답변 선택 후 [다시 제출하기] 버튼 선택</p>

## 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 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세부 추진 사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움직입니다.



### 1.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편성단계

-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 운영단계

-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 평가단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가능 평가

### 2. 입학전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범위 준수
-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준수
- 입학전형 영항평가 실시



## 7. 안전교육

### 1. 학교 안전 사고

학교는 가정과는 달리 다수의 학생들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육을 하는 관계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반면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만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고에 대한 안전 의식과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이나 시설물과의 가벼운 접촉에 의해서도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주로 체육 수업(28.4%), 점심시간(18.7%), 휴식 및 청소 시간(17.8%), 수업 시간(15.2%)에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 1 장난에 의한 사고 중학생 지모 양과 배모 군이 장난을 하다 지모 양이 배모 군을 놀리고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배모 군이 미닫이 교실 문을 열려고 손을 넣자 다급해진 지모 양이 문을 닫아 버렸다. 그 바람에 배모 군의 손이 문과 문설주에 끼어 손가락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례 2 체육 활동 중의 사고 초등학생 오모 군은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서 매달리기 연습을 하다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오모 군은 철봉 평가를 위해 휴식 시간 중 연습을 하고 있었다.

사례 3 급식 중의 사고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울부짖으며 양호실로 갔다. 육안으로 살펴봐서는 모르겠기에 병원으로 치료를 받게 했다. 병원에서도 가시를 발견하지 못해 1주일여 동안 약물 치료만 했으나, 학생이 계속 불편하다고 해 종합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가시가 발견되어 입원하여 수술로 가시를 제거했다.

#### ▶ 알아 두세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상으로 안전한 행동에 대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지도해 주세요

- 체육 활동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 체육 활동 중에 친구와 장난하지 않는다.
- 평상시 친구에게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아이의 의자를 뒤로 빼 버리거나, 압정을 의자 위에 놓아서 찢리게 하는 등의 장난)
- 급식 시간에는 식판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 급식판을 가슴과 배 사이의 높이에 둔다.
- 책걸상 주변 정리 정돈을 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
- 자리를 이동할 때는 의자를 넣는다.
- 창문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계단에 있는 친구를 밀거나 뛰어 내려가지 않는다.
- 화장실, 현관의 유리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 청소 도구를 가지고 휘두르거나 장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자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 안전사고란?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2. 학교 재난 사고

학교에서는 화재, 붕괴, 자연 재난 등 다양한 재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해 주도록 합니다.

▶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 시설에서 발생된 재해 건수는 4,476 건으로 풍해, 화재, 수해, 설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1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강당(체육관) 전소 00 초등학교 강당동(체육관)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강당동(체육관) 내부 전등에서 발화되어 천정 전소 및 내부 급식실 그을음으로 건축, 설비, 물품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례 2 수해(집중 호우)로 인한 급식소 침수 00 전자공업고등학교 급식실 뒤편 토사 유실로 급식실 환기 설비 및 냉난방기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례 3 설해(폭설)로 인한 지붕 파손 000 중학교 다목적 강당이 폭설로 인해 지붕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알아 두세요!

재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황하여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자녀에게 안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지도합니다.

자녀에게 지도해 주세요

▶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 건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기둥 또는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 처치를 한다.
-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둔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 붕괴와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 선생님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몸을 낮추어 대피한다.
-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 평소 비상 대피로를 확인해 둔다.
- 연기가 있다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벽을 더듬으며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 민방공 경보가 발령했을 때

- 민방공 경계경보가 발령했을 경우 - TV,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학교 안내에 따라 대피할 준비를 한다.
    - 학교의 통제에 따라 전등을 끄고 커튼을 쳐서 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다.
  -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면 - 학교의 안내에 따라 대피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한 뒤에도 방송을 들으면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 ※ 경계경보 : 1분 동안 울리는 일정한 높낮이의 음의 사이렌  
 ※ 공습경보 : 3분간 울리는 사이렌(음의 높낮이가 오르내림)

### ▶ 유해 물질에 누출되었을 때

- 건물의 높은 곳이나 고지대로 대피한다.
- 실내에서는 바깥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를 끈다.
- 방독면을 착용하고 비닐 비옷 등을 입어 맨살이 밖으로 드러나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학교의 안내에 따라 바람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다.

### ▶ 붕괴, 매몰된 경우에

-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혈액 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한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통을 지르지 않는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 휴대 전화는 불통 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축전지(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 주기로 꺼준다.
- 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한다.

### ▶ 재난·위기 관련 스마트폰 무료 애플리케이션

- 안전디딤돌 : 재난 발생 소식과 기상 특보 등을 문자로 전송하며, 화재,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별 행동 요령과 심폐 소생술 등 응급 대처법을 동영상으로 알려 주며, 주변의 대피소, 병원, 약국 위치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8. 자녀에게 알려주는 성교육

### 1.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성교육은 남, 녀의 성 관계에 대한 지식과 임신 및 생리학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가지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교육**입니다.

- ① 아이들 몸의 성숙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 ②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문화의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③ 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 성교육에 임하는 자세

- ①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기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 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기
- ② 딸이나 아들 모두 상대방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③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④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 질문 뒤에는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 ⑤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성교육을 합니다.
- ⑥ 정확한 성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님들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⑦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 ⑧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 기관을 찾습니다.

### 3.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 ①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십시오.
- ②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신체접촉 전 상대의 의사를 항상 먼저 물어보도록 알려줍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으면 yes라고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응답은 yes가 아니라 NO일 수 있습니다.
- ③ 호의를 베풀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둘이 집에 있게 하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④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 ⑤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4. 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인가?

- ①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기타의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가출 청소년은 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365일 24시간 쉴 새 없이 성매매를 위한 거래의 조건이 오가고 있습니다.
- ③ **휴대폰 채팅 어플 사용 자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채팅 어플의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성범죄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채팅 어플 사용 자제를 권유합니다.

## 5. 성폭력 대처하는 방법

### ① 성폭력의 개념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 노출, 어린이 추행, 윤간, 강도, 강간 등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 ② 올바른 성교육

성폭력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해 주기

-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 알려주기(Good Touch, Bad Touch)
- 일상생활에서 'No'라고 말하는 방법 알려주고 자녀의 'No' 인정해 주기
- 자녀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항상 주지하기

### ③ 성폭력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

#### 1.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학교장이나 교사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률에 의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2. 주요 법규 내용

- 1)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이성, 동성)
- 2) **비 친고죄(非親告罪)(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재판가능)**
- 3) 합의해도 처벌 (피해자자 원치 않아도 처벌)
- 4) 유사 성교행위 신설(19세 미만.장애인→ 모든 피해자로 확대)
-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공중밀집 장소 추행,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
- 6)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13세 미만.장애인 전면폐지 및 강간, 살인죄는 모든 피해자)

#### 3. 성폭력 피해 학생 응급조치

-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에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성폭력 여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학생을 데리고 감
- 몸에 외상이 남아있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함.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급적 얼굴과 같이 찍도록 하며, 멍이나 긁히거나 뜯긴 상처 등이 있을경우 발견되는 대로 촬영해 둠
- 병원 진단이나 몸에 남은 상흔 외에 다른 증거물, 이를테면 가해자가 흘리고 간 물건 등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

#### 4.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 02-338-5801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함.
- 관련 기관 : 여성 긴급상담전화(136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 경기해바라기센터(월스톱 지원센터)(1899-307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
- 성범죄자 조회 및 아동 성범죄 피해 및 대응요령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http://www.sexoffender.go.kr) 접속

## 9. 아동학대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1. 아동학대(가정폭력)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

학대 유형	학대 내용 및 예시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 및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매매 및 음행, 음행 매개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란 보호자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아동학대(가정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4.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의무

<p><b>아동학대 신고 의무자</b></p>	<p>직무 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p> <p>“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p> <p>- &lt;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gt;</p> <p>◎ 신고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112</li> <li>-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li> <li>-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li> </ul>
---------------------------	----------------------------------------------------------------------------------------------------------------------------------------------------------------------------------------------------------------------------------------------------------------------------------------------------------------------------------------------------

## 10.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안내

###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평등한 가정이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돈벌이, 집안 일, 육아 등에서 의사 결정으로 평등하게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며

-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2)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남녀 서로 당연하게 생각하며
- 3)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동등하게 가질 권리를 주장하는 가정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 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OO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	여성스러움을 강요	"OO이는 독서할 때 제일 행복해보여."	행동, 노력에 대한 칭찬
"가족끼리든 속옷 차림 뭐 어때."	사춘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	심리적으로 친밀한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아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 ▶ 침묵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실천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 ▶ 성별, 연령에 앞서 '동료, 이웃,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OO 가족이 됩시다

## 11. 감염병 예방 안내

###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건실 요양은 1시간으로 이후 가정 요양 또는 병원 진료

### 등교 중지 감염병

가. 법정 감염병(제1군~4군)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나. 학령기에 걸리기 쉬운 감염병 (\* 학생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및 질병 상황 변화 가능)

병명	초기 증상	등교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독감 (인플루엔자)	고열, 관절통, 기침, 콧물 등	열이 내리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결핵	기침, 가래, 미열, 피로, 식욕부진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결막염 (비법정감염병)	충혈, 눈 가려움, 이물감, 눈물 등	증상이 사라진 후 2일까지

###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① 병원 진료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② 가정에서 휴식 (등교 중지 후 학원도 가지 말 것)
- ③ 완치 후 병명과 격리 기간, 감염병 여부 등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학교로 제출 (출석으로 인정됨)

### 감염병 예방 수칙

1. 손 씻기 - 손 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 감염성 질환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① 화장실에서 나올 때
- ② 음식을 먹기 전
- ③ 체육활동 후,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
- ④ 코를 킁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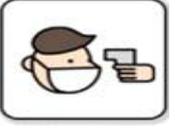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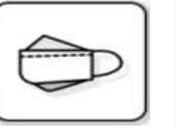
2. 기침 에티켓 지키기

- 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② 휴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3. 마스크 착용하기



##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p>★ <u>대상자 축소</u></p> <p>*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p> <p>*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p>
발열검사	전체 대상	★ <u>폐지</u> (학 자율)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 <u>자율적 착용</u>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 <u>폐지</u> (학교 자율)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u>환기 횟수 조정</u>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p>★ <u>유지</u></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b>대상자 축소    발열검사 폐지    자율적 착용</b></p>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 → 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방법

(★재학생: 최초 1회 다른계정로그인)

- '23.2.23부터 2023학년도로 로그인되므로 기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로 로그인 불가함

### ☞ 조치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 실행 → '다른계정로그인( 다른계정 로그인 )' 클릭 → '예' 클릭  
 →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뒷 네자리) 입력, 비밀번호 설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 예) 생년월일 160102 -> 초기비밀번호 0102  
 (※ 학부모 접속으로 다자녀 등록 필요시 참여자 추가 후, 자가진단 참여)

## 3. 마스크 착용

★ 실내·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b>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b></li> </ul>
착용 권고	① <b>코로나19 의심 증상*</b> 이 있거나, <b>코로나19 고위험군**</b> 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② <b>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b> 또는 <b>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b>	좌동
	③ 최근 <b>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b>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b>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b>	<b>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b>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b>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b>	<b>《사례별 권고 기준》</b> 1. 교실, 강당 등에서 <b>합창 수업</b>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b>응원·합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b>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b>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b> 4. 그 밖에 <b>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

## 12.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청소년 흡연과 건강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벤젠, 카드뮴 등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4,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담배에 일찍 노출될수록 중독 위험과 각종 질병,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 간접흡연, 3차 흡연

①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며,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② 3차 흡연이란,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외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 흡연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 가.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나.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다.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 라.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마.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 13.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약물 오. 남용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약물 오. 남용 예방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연계된 관심과 지도로 약물 오. 남용을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약물 오. 남용의 유형

<b>의약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수로 의약품을 과량 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li> <li>○ 전문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상당한 독성의 위험이 있음(심장약, 혈압약, 수면제 등)</li> <li>○ 다른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 (다이어트, 수면제, 구토 유발)</li> </ul>
<b>알코올 (음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진정제로 신경계를 둔하게 만들</li> <li>○ 알코올 관련 장애는 사고, 폭력, 자살 위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li> </ul>
<b>니코틴 (흡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자의 80%는 18세 이전에 담배를 처음 시도함</li> <li>○ 청소년기는 미성숙 상태이기에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가 크며, 유전자 변형을 초래</li> </ul>
<b>카페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인 함유된 음식(커피, 에너지음료, 초콜릿, 진통제 및 감기약, 체중 감량제 등)</li> <li>○ 중독 증상: 정서불안, 위장장애, 빠르고 불규칙한 심박수 등</li> </ul>
<b>흡입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흔히 남용되는 흡입제: 본드(접착제), 방향제, 부탄가스 등</li> <li>○ 중독 증상: 망상, 언어장애, 반사작용 억제 등</li> </ul>

#### 약물 오. 남용 예방하기

**(1) 약물 오용 예방 :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하기**

- 약복용 사용법을 확인(투여용량, 사용시간, 바른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한다.

**(2) 약물 남용 예방 : 술, 담배, 카페인, 흡입제의 중독에 빠지지 않기**

○ 음주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 술을 권하는 친구들의 모임은 피하기
- 음주 이외에 즐길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제안하기

○ 흡연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 먼저 NO라고 외친다. → “아니야! 난 담배 피우기 싫어!”
- 이야기의 주제를 돌린다. → “어제 그 드라마 봤어?”
-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 → “너는 왜 담배를 피우니?”
- 관심을 주지 않는다. → “오늘 집에 일이 있어.”

○ 카페인 중독에 대처하는 방법

- 커피, 커피 우유, 초콜릿, 탄산음료, 이온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삼가
- 숙면을 위해 잠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을 삼가
- 카페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주위를 환기
- 카페인 섭취 시 하루 권장량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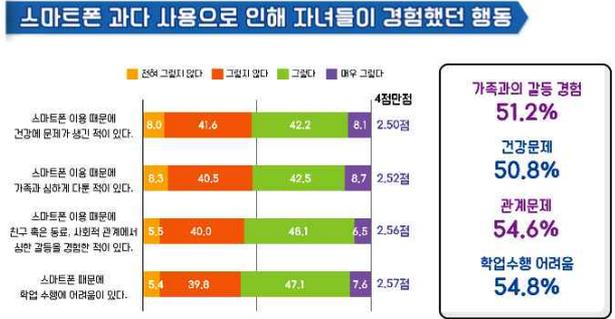


# 14. 정보통신윤리 교육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https://www.iapc.or.kr/>)

## 비긴 어게인(Begin again) : 스마트한 부모의 탄생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조남중학교 정보과학부



### 부모-자녀(유아동/청소년) 간 과의존 위험성 관계는?

부모가 위험군 인 경우 유아동/청소년 자녀 또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만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님도 함께 조절하여야 합니다.

### 과의존의 예방과 대처 전략 : 마음의 면역력 향상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 향상!**

**정기적인 운동**

**잘 쉬고**

### 과의존의 예방과 대처 전략 : 마음의 면역력 강화 방법

####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조절능력 강화 방법

마음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먹여주기

**욕구/감정 관리**

마음의 피가 잘 순환하도록 마음 운동과 관리

**생각 관리**

### 과의존의 예방과 대처 전략 : 마음의 면역력 강화 방법

우리 자녀는 왜 스마트폰 · 인터넷을 조절하지 못할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자율성** 욕구 충족:  
"인터넷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관계성** 욕구 충족:  
"친구들이 하나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성취 및 성공 경험을 하고 싶은 **유능성** 욕구 충족:  
"시험 점수 올리는 것보다 게임 레벨 올리는게 훨씬 쉬워요"

### 과의존의 예방과 대처 전략 : 마음의 면역력 강화 방법

우리 자녀는 왜 스마트폰 · 인터넷을 조절하지 못할까?

**감정**

**재미와 스킬**  
"스마트폰 만큼 재미있는 건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받을 때 스마트폰이 짱이죠"

**생각**

**긍정적 생각**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낮은 위험 인식**  
"스마트폰이 왜 위험해요? 다들 사용하는데..?"

### 마음의 면역력 강화: 욕구/감정관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때/또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감정과 욕구(바람)을 존중해 주세요

다만,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에만 문제제기를 하세요

-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
- 1 스마트폰 과다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대화를 해보세요.
  - 2 자녀가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활동에 **관심** 갖도록 노력합니다.
  - 4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잠들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수면 지도**를 해주세요.
  - 5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앱'**을 함께 이용해보고 지도해주세요.

-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
- 6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줍니다.
  - 7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마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합니다.
  - 8 산책, 공연관람 등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해주세요.
  - 9 (보행·이동 시) 이동 할 때는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도록 지도해주세요.
  - 10 (공공장소 등) 도서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기본 매너'**를 지도해주세요.

## 15. 장애이해 교육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징계 강화 방안

#### □ 배 경

-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폭력 예방

#### □ 문제점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경징계 비율이 높아,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재발 우려('11.10. 국정감사)

- \* 경징계(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중징계(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 □ 징계강화 방안

- (적용 대상)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
- (징계강화 내용)
  -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 □ 협조 사항

- (교육청)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강화토록 지도
- (단위 학교)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양정기준(학칙) 강화 등 제정·개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적용)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징계 강화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대상 연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 관계인을 참여시키도록 함.

#### □ 추진계획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양정기준(학칙) 제정·개정 : '12년~ 적용
  - ※ 학칙 제정·개정 시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보다 높은 징계수위 반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제3조(정의)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교육**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학 및 전학 강요·거부 금지
- 수업, 시험, 수학여행 등 교내외 활동의 제한·배제·거부 금지
- 교육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시 교육 보조인력 배치
- 통학 및 교육기관 내 이동 등 편의시설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및 의사소통수단 제공



저희 학교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것 같습니다.

20

## 장애학생대상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교육 (장애학생 학교폭력 Q&A)

**Q.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을 알게 되거나, 목격하게 되었을 경우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117)에 신고하고, 학교장 및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폭력일 경우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 가벼운 다툼 끝에 장애학생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담임교사가 일반학생에게 주의와 벌점을 주고 장애학생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해결해도 될까요?**

A. 학교폭력이 경미한 경우라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담임종결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학교장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전담기구에서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담임 임의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교과부학폭사안대응기본지침 2012.03.16)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

< 판단의 기준 >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Q. 장애학생이 다른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가해 장애학생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정상 참작이 되나요?**

A. 가해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추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육적 지원 또는 상담 지원을 학교나 교육지원청 제공 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이든 장애학생이든 상관없이 가해학생이라면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학생인 경우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의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 계획된 행위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사안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유형별에 따라 대처 방법을 차별화하여 사안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즉시 교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A. 1)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

- 2)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117) 또는 경찰(112)에 신고, 학교에 보고한다.
- 3) 입은 옷은 그대로, 몸은 씻지 않게 한다.
- 4)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아 놓는다)
- 5) 증거물품은 (가해자 체모, 체액,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 6) 72시간 내에 ONE-STOP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로 피해학생을 데리고 간다.  
이때 이동이 어려우면 112순찰차나 119응급차의 지원을 받는다.

**Q.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후 등교했을 때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피해학생이 빠른 시간 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 ▶ 피해학생의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한다.
  - ▶ 피해학생의 학업 수행 정도와 과제의 양을 조절해 준다.
  - ▶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민감한 보살핌을 제공하되 또래나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 피해학생에게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즉시 분리시킨다.
  - ▶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즉각적인 분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성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여 2차, 3차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한다.
  - ▶ 친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에게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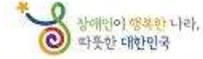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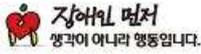
**Q.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의 부모를 상담하게 될 때 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심정을 공감하고 사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 담임교사를 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자의 격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디인가요?**

- A. ▶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 117,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1899-3075  
 ▶ 해바라기 여성 . 아동 센터 : 1899-3075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www.korea1391.org](http://www.korea1391.org)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 올바른 명칭 : 장애인



## 장애우? VS 장애인?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요!**



### 기억하세요!

- '장애자', '장애우' ▶ 장애인
- '일반인', '정상인' ▶ 비장애인

글 : 김차명(경기도 시흥정왕초등학교 교사)    그림 : 강세라(충북 상봉초등학교 교사)



## 16.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제15조)

영역	주요 내용
교육 활동 침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b>교육활동 중인 교원</b>에 대하여 교육 활동 침해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한정 짓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li> <li>※ 교육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li> </ul>
교육 활동 침해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li> <li>「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li> <li>「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li> <li>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li> </ul>

### 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제15조, 제14조의3)

영역	주요 내용
피해 교원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청과 학교의 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li>보호조치 유형으로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li> <li>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5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li> </ul>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li> </ul>
관할청에 의한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li> </ul>

### 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18조)

영역	주요 내용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li> <li>전학(⑥호)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li> <li>①,②,④,⑤호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 조치할 수 있음. 다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li> </ul>

## 라.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별 절차

###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절차	절차에 따른 업무 추진 내용	기타
사안 접수 및 응급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등: 접수, 신고</li> <li>- 목격자, CCTV 등 존재 확인 후 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고</li> <li>■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에게 교권 침해 관련 사안 보고</li> <li>-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및 심각할 경우 의료기관 연계 (필요 시 피해 교원 일시적 수업배제 등 침해학생과 분리 조치)</li> <li>- 침해 학생이 안정된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 내용, 치료비 부담 가능 등 고지)</li> <li>-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 접수대장: 침해 내용 등 기재</li> </ul>
사안 조사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 등에 의한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 진술서 작성(육하원칙으로 기술)</li> <li>-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li> </ul> </li> <li>■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li> <li>-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기타(특별휴가, 병가 등)</li> <l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담당장학사 유선 또는 통합메세지)</li> <li>- 필요 시 서면보고 요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 및 관련자가 경위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ul>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결과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집: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li> <li>-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li> </ul> </li> <li>■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li> </ul> </li>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학교장에게 심의의결서 보고</li> <li>- 학교장: 학생의 보호자, 피해교원에게 결과통지서 서면 통보</li> </ul> </li>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결과 보고(공문): 시흥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li> </ul> </li> </ul>	<p>(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충분히 부여</li> <li>■ 제척, 기피, 회피 등 여부 확인</li> </ul>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학생 조치 집행 기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li> <li>-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li> <li>-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li> <li>※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li> </ul> </li> <li>■ 피해교원 치료완료: 보호자 등에게 치료비 요청→필요시 시교육청으로 치료비 신청(추후 구상권 행사)</li> <li>■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부모 참여 확인→미 참여시 시흥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및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에게 보고</li> <li>■ 피해교원 공무상 병가 승인 확정→ 시흥교육지원청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 장학사</li> <li>■ 피해교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 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가능(도교육청, 교육지원청)</li> </ul> </li> </ul>

## 17. 조남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학부모회는 조남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조남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③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순으로 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 제13조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제14조 (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제15조 (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7조 (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 (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